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제2018 - 418호

의 안 명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대 상 기 관 국 토 교 통 부

의결연월일 2018. 10. 22.

주 문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0월 22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신 근 호

위 원 김 현 철

위 원 이 재 경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별지]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방안

2018. 10.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제도 현황	2
III. 문제점	5
1.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이 협소	5
2. 의무적용 대상보다 권장대상인 소규모 주택이 범죄에 취약	6
3. 건축물 사용승인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점검사항 미비 ...	7
IV. 개선방안	8
1.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 확대	8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권장항목 조정 검토	10
3. 건축물 사용승인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점검사항 추가	12
V. 조치사항	13
[붙임 1] 국민생각함 생활안전[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요약 ·	14
[붙임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19
[붙임 3]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조례제정 지자체 현황 ·	24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추진배경

- 범죄는 피해당사자의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특히 주거지 발생 범죄는 국민 주거권을 침해하고 큰 불안감을 초래

※ 범죄 발생장소는 주거지가 큰 비중('16년 13.7%)을 차지하며, 성폭력범죄의 경우 주거지가 가장 높은 비율('16년 17.4%)을 차지(검찰청 2017 범죄분석)

- 최근 범죄유발 환경요인 개선을 위해 지역시설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가 증가추세**

* CPTED(셉테드,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적용원리는 감시, 접근통제, 공동체강화를 통해 범죄행위가 발생되기 어렵게 하고, 거주자는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함(한국셉테드학회)

** 2018년 7월 기준, 전국 195개 지자체(광역시 16개, 기초 179개)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조례를 운영 중(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거지의 경우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에 제정·운영

*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편의점,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은 의무 적용, 50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은 권장 적용(국토교통부 고시)

-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이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므로, 그 외 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들이 범죄예방에 취약할 우려

※ '14.12.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301만 세대로 전체 아파트의 38%를 차지(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추진경과

- 범죄예방 건축설계 적용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5.11. ~ 27.

※ '국민생각함'을 통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협업

- 지자체 실무자, 관련 전문가 등 의견청취 : ~7.18.

-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기관협의 : ~10.2.

II.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도 현황

□ 범죄예방 건축기준 제도 개요

- 자연적 감시·접근 통제 등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등에 대해 정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 출입구·담장·경비실 등 10개 항목에 대해, 감시 용이·CCTV 설치 등 안전 시설기준 의무적 충족 요구

< 항목별 기준 >

항목별	기준 요약
출입구	■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 출입구 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로 계획
담장	■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없어야 하며, 감시를 위해 투시형으로 계획
부대부위 시설	■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 놀이터는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 CCTV 설치
경비실	■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곳에 설치, 고립지역을 수시 관망가능한 CCTV 설치
주차장	■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곳에 설치, 고립지역을 수시 관망가능한 CCTV 설치
조경	■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함
주동 출입구	■ 통제와 인지가 용이, 주변보다 밝은 조명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해야 함
현관문·창문	■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장치·도어체인을 설치, 우유투입구 등 금지
승강기·복도·계단	■ 지하층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 CCTV 설치, 계단실에는 외부 공간에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 설치, CCTV 1개소 이상 설치
수직 배관	■ 지표면에서 지상 2층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오르내릴 수 없는 구조

□ 500세대 미만 아파트·다세대주택·단독주택 등은 권장적용

- 건축물 외부에 대해 감시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500세대 이상 아파트보다 완화된 기준을 권장

< 항목별 기준 >

항목별	기준 요약
창호재	■ 일정 안전기준에 맞게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
출입문	■ 일정 안전기준에 맞게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
주출입구	■ 자연 감시가 용이하도록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
수직 배관	■ 지표면에서 지상 2층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오르내릴 수 없는 구조
건축물 외부	■ 측면, 뒷면, 출입문,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 사물 식별 가능한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
검침 기기	■ 전가·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 내에서 검침 않는 구조

[참고 1] 범죄예방 건축기준 관련 주요 사례

(자료: 대전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예시)	기준 비적용 (예시)
 주변과의 시선연결을 고려하여 3면 이상 투시형 구조로 계획된 경비실	 주변과의 시선연결이 미흡한 경비실
 단지 내 보행동선과 인접하고 주동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된 놀이공간	 단지 내 고립되어 배치된 놀이공간
 조명이 충분히 설치되어 안정감을 느끼는 보행공간	 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에 위험을 느끼는 보행공간
 밝은 색상으로 도색되고 연색성이 우수한 조명이 설치된 주차공간	 어둡고 연색성이 부족한 조명이 설치된 주차공간

[참고 2] 규모에 따른 주택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 참고)

◆ 공동주택

구분	규모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200평)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단독주택

구분	규모
다중주택 (우측요건 모두 충족)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으며,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미설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100평) 이하이고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 (우측요건 모두 충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200평)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관	관사 등 공적으로 쓰는 주택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

Ⅲ.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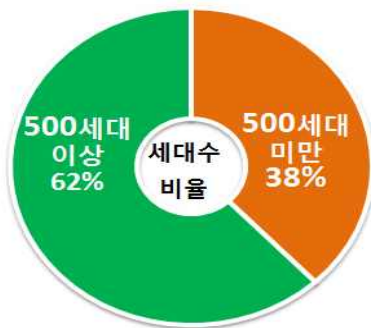
1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이 협소

- 아파트 중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500세대 이상) 세대수는 전체의 62%에 불과하여, 나머지 38%는 범죄예방에 미흡할 소지

※ '14년 말 기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3,010,428세대로 전체 아파트 세대 수(7,947,306세대)의 38%에 이릅니다

<2014년 기준 아파트 규모별 세대수 현황>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구분(단위)	동수(동)*	세대수(세대)*
500세대 이상	70,966(56%)	4,936,878(62%)
500세대 미만	55,229(44%)	3,010,428(38%)
계	126,195(100%)	7,947,306(100%)

* 동수·세대수는 건축물대장 표제부 정보 활용 제작성

-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의무가 있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보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범위가 협소

※ 안전점검 등 일정한 의무가 부여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300세대 이상 등

<공동주택관리법령 상 의무관리대상 범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요 의무 사항
300세대 이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 자치의결기구 구성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포함)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	위탁관리업체 선정 시 입찰 등 일정기준 준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회계서류 작성·보관·공개, 회계감사 수감 등

2 의무적용 대상보다 권장대상인 소규모 주택이 범죄에 취약

-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인 500세대 이상 아파트보다는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주택에서의 범죄가 더 많이 발생

※ 범죄 발생장소별 통계를 보면,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의 건수가 많았으며, 10만㎡당 건수는 단독주택의 건수가 2배 이상 많았음

<2016년 단독·공동주택의 건축물 현황 및 범죄발생건수>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구분	동수(천 동)	범죄발생건수*	연면적(10만㎡)**	10만㎡당 범죄발생건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4,166	34,535	4,975	6.94
공동주택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 포함)	422	33,593	12,085	2.78

* 범죄발생건수 출처: 경찰청 2016년 범죄통계

** 연면적 및 동수 출처: 2017 건축통계 요약집

- 대다수 국민들은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의무적용 대상(500세대 이상) 보다 권장 대상(500세대 미만)이 범죄에 더 취약하다고 인식

※ '국민생각함'을 통한 설문에 응답자의 88.0%가 500세대 미만의 권장적용 대상이 500세대 이상의 의무적용 대상보다 범죄에 취약하다고 응답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예시>

(문) 귀하께서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적용' 대상과 '권장 적용' 대상 중 어느 쪽이 범죄에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범죄예방 설계기준 의무적용 대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이 더 위험	49	12.0
② 범죄예방 설계기준 권장적용 대상 (5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 주택 및 단독주택)이 더 위험	360	88.0
계	409	100.0

- 건축물 건립 후 사용승인 검사조서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항목이 없어 점검에서 누락될 소지

※ 건축물 사용승인에 필요한 검사조서 양식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항목이 빠져있어, 검사를 대행하는 건축사들이 점검에서 빠뜨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보완이 필요('18. 7. ○○구청 건축담당자 의견)

<현행 검사조서 양식>

◆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급수시설	제62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일치 []불일치 []해당없음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중 일부)

IV. 개선방안

1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 확대

- 의무적용 대상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300세대로 확장
 -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범죄예방 건축기준 10개 항목*(아파트에 대한 기준)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

* 출입구, 담장, 부대·복리시설(CCTV 설치 포함), 경비실(CCTV 설치 포함), 주차장(CCTV 설치 포함), 조경, 주동 출입구, 현관문·창문, 승강기·복도·계단(CCTV 설치 포함), 수직 배관 등의 설치기준

※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 주택 '국민생각함' 설문에서도 500세대 미만까지 의무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3.3%로 대다수('18.6. 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예시]

(문) CPTED 권장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중 500세대미만 아파트 단지 신축시, '범죄예방건축기준' 의무화와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존재합니다. 귀하의 생각은?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찬성(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CPTED 의무화)	300	73.3
② 일부 찬성(소규모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CPTED 의무화)	85	20.8
③ 반대(현행대로 유지)	13	3.2
④ 잘 모르겠음	11	2.7
계	409	100.0

※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추가 비용은 CCTV 설치비용 정도, 현재 의무적용되지 않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에도 CCTV는 설치되고 있으므로, 실제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18.9. 전문가 의견청취)

※ 기 건축된 300세대 규모 아파트 사례 조사 결과, CCTV설치비용은 대당 250만원(70개 기준, 설치금액을 수량으로 나눈 금액), 세대당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314세대 기준, 설치금액을 세대수로 나눈 금액)되어 부담 적음

[300세대 공동주택 CCTV 공사금액 사례]

주택 지구명	세대수	CCTV(감시카메라) 수량	설치금액(백만원)	대당 단가(백만원)	세대당 금액(백만원)
김포 OOB	314	70개	181	2.5	0.6
평택 OOB	326	39개	107	2.7	0.3

(자료: LH 제출자료 재구성)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과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 등 개정

< 개선 예시 >

현행	개선안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u>500세대 이상</u>인 아파트 -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u>300세대 이상</u>인 아파트 - 이하 생략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세대수가 <u>500세대 이상</u>인 주택단지에 한한다) - 이하 생략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세대수가 <u>300세대 이상</u>인 주택단지에 한한다) - 이하 생략 -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권장항목 조정 검토

- 권장항목 6개 중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용으로 개선 검토
 - (의무적용 항목)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사각지대·주차장 등에 적절한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
 - (적용대상) 300세대 미만 아파트·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
 - * (권장 6개 항목) 창호재, 출입문, 주출입구, 수직 배관, 건축물 외부·사각지대·주차장, 검침 기기 등 설치기준
 - ※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주택에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소를 묻는 '국민생각함' 설문에서도 사각지대(77.8%)와 주차장(44.7%)를 꼽는 국민이 많았음('18.6. 권익위)

[국민생각함 설문 결과 예시]

(문)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50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복수응답)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주차장	183	44.7
② 계단실	129	31.5
③ 어린이놀이터	75	18.3
④ 사각지대(고립지대)	318	77.8
⑤ 기타(서술식)	17	4.2
계	409	100.0

※ 세종시의 경우 단독주택용지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권장항목 중 일부항목이 의무 적용됨

[세종시 1-4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일부 사례]

√ 단독주택용지의 안전한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 건물의 설계·건축 시에는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 도로, 보행로 쪽으로의 창문 배치를 의무화하고, 인접 건축물이나 담장, 수목 등을 피하여 배치한다.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틈이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택 침입 시 발판이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 담장의 꼭대기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한다.

■ 조명의 설치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 출입구나 현관은 동작감응형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한다.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1조 개정

< 개선 예시 >

현행	개선안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1조(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 관한 사항)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u>아파트(500세대 미만)</u>는 다음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를 권장한다. 1. 창호재는 별표 1의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2. 출입문은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설치한다. 3. 주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되,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 반사경, 거울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한다. 4. 수직 배관은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한다. 5. <u>건축물의 측면이나 뒤편,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u> 6.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1조(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 관한 사항)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u>아파트(300세대 미만)</u>는 다음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제5호는 의무적용한다. 1. 창호재는 별표 1의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2. 출입문은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설치한다. 3. 주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되,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 반사경, 거울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한다. 4. 수직 배관은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한다. 5. <u>건축물의 측면이나 뒤편,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u> 6.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3 건축물 사용승인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점검사항 추가

○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조서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점검사항을 포함

※ 건축물 사용 검사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양식 개선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개선

< 개선 예시 >

현행				개선안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양식				◆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양식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현장조사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현장조사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급수시설	제62조			급수시설	제62조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자원법」 제5조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자원법」 제5조
장애인 편의시설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자원법」 제4조	장애인 편의시설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자원법」 제4조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범죄예방 건축기준	범죄예방 건축 기준 고시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V. 조치사항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규정	관련기관	조치기한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 확대	○ 의무적용 대상을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장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조 등	국토교통부	2019.10.
범죄예방 건축 기준 권장항목 조정 검토	○ 권장항목 6개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의무 적용 으로 개선 검토 - 건축물의 측면이나 뒷면, 사각지대 등에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 의무화(고시 11조 제5호) ▪ (적용대상) 300세대 미만 아파트·다세대· 다가구·단독주택 등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1조	국토교통부	2019.10.
건축물 사용승인 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점검 사항 추가	○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조서에 범죄예방 건축 기준 점검사항을 포함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국토교통부	2019.10.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가 개정되는
대로 해당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 범죄
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정·지침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



국민신문고과 ('18. 6. 8.)

□ 추진개요

○ 공모주제 : 범죄예방 건축설계(CPTED*, 이하 '셉테드') 적용 방안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키는 건축설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민생각함 자문 MOU 체결 기관) 협업으로 진행

○ 공모기간 : '18. 5. 11.(금) ~ 5. 27.(일)

○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을 통한 설문 및 댓글참여

□ 추진결과

○ 참여건수 : 총 589건(설문참여 409, 댓글의견 180)

○ 주요 분석결과

① (정책 인지도) 셉테드 정책 시행여부·적용범위 모두 인지도 낮음

※ 응답자 75.1%가 범죄예방 건축설계를 모르고 있었음

응답자 85.1%가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적용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

② (정책 적용범위 확대) 응답자 94% '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CPTED 권고적용」(AS-IS) → 「CPTED 의무적용」(TO-BE)해야'

※ 응답자 73.3% '500세대 미만 아파트 모두 적용'

응답자 20.8% '500세대 미만 아파트 중 규모에 따라 적용'

규모	비율(%)
100세대 이상부터(100~499)	49.4
200세대 이상부터(200~499)	16.5
300세대 이상부터(300~499)	17.6
400세대 이상부터(400~499)	12.9

※ 500세대 이상 아파트 외 공동주택(권장적용)에서 주관적 범죄취약 장소는?

☞ 고립지대(77.8%) > 주차장(44.7%) > 계단실(31.5%) > 기타 순 응답

③ (정책 세부수요) CCTV(59.2%), 조명(46.5%), 적정위치 수목식재(40.1%) 등 범죄 이행심리 차단 장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

덧붙임1

설문 세부결과

1. 귀하께서는 '범죄예방 건축설계 (CPTED)' 를 알고 계셨나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알고 있었다.	102	24.9
② 모르고 있었다(이번 공모전을 통해 알게 됨)	307	75.1
계	409	100.0

2. '범죄예방 건축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수응답)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범죄자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출입통제 시설 설치 및 외벽구조	148	36.2
②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운동시설 및 놀이터 설치	135	33.0
③ 수목을 식재할 때 사각지대나 고립지대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	164	40.1
④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 충분한 조명 설치✓	190	46.5
⑤ 범죄자 침입을 감시하는 CCTV 설치✓	242	59.2
⑥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추고 잠금장치 설치가 가능한 세대 창문 설치	112	27.4
⑦ 주거지(사적공간)와 비주거지(공적공간)의 명확한 구분	77	18.8
계	409	100.0

✓는 여성응답자 선택 수 상위 3개 항목

3.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의무적용'되나, 500세대 미만의 공동 주택에는 '권장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알고 있었다.	61	14.9
② 모르고 있었다(이번 공모전을 통해 알게 됨)	348	85.1
계	409	100.0

4. 귀하께서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적용' 대상과 '권장 적용' 대상 중 어느쪽이 범죄에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범죄예방 설계기준 의무적용 대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이 더 위험	49	12.0
② 범죄예방 설계기준 권장적용 대상 (5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 주택 및 단독주택)이 더 위험	360	88.0
계	409	100.0

5.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50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수응답)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주차장	183	44.7
② 계단실	129	31.5
③ 어린이놀이터	75	18.3
④ 사각지대(고립지대)	318	77.8
⑤ 기타(서술식)	17	4.2
계	409	100.0

6.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에서 범죄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수응답)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방범활동 강화(경찰 방범초소, 주민 자율방범활동 등)	147	35.9
② 길거리 및 공공장소에 방범시설 설치(CCTV, 비상벨)	268	65.5
③ 길거리 조명 밝게 하기	242	59.2
④ 길거리와 공공장소에 디자인을 통한 환경 개선	127	31.1
⑤ 지역내 유해시설 및 환경 정비	130	31.8
⑥ 건축물의 방범시설물 강화	117	28.6
⑦ 기타(서술식)	9	2.2
계	409	100.0

7. CPTED 권장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 중 500세대미만 아파트 단지 신축시, '범죄 예방건축기준' 의무화와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존재합니다.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찬성(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CPTED 의무화)	300	73.3
② 일부 찬성(소규모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CPTED 의무화)	85	20.8
③ 반대(현행대로 유지)	13	3.2
④ 잘 모르겠음	11	2.7
계	409	100.0

8. **(‘찬성’ 선택자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도 CPTED 의무화를 해야하는 이유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지역내 주민의 범죄안전 확보	249	83.0
② 지역내 유해시설 및 환경 정비	44	14.7
③ 기타(서술식)	4	1.3
- (기타) 무응답	3	1.0
계	300	100.0

9. **(‘일부찬성’ 선택자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CPTED 적용은 어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할까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400~499세대아파트에도의무화(400세대이상아파트부터 CPTED적용)	11	12.9
② 300~499세대아파트에도의무화(300세대이상아파트부터CPTED적용)	15	17.6
③ 200~499세대아파트에도의무화(200세대이상아파트부터CPTED적용)	14	16.5
④ 100~499세대아파트에도의무화(100세대이상아파트부터CPTED적용)	41	48.2
- (기타) 무응답	4	4.7
계	85	100.0

10. **(‘반대’ 선택자만)** 현행(대규모 공동주택에만 CPTED 의무화)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	응답자수(명)	비율(%)
① 소규모 공동주택 적용시, 건축설계비 및 방범시설 설치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우려	6	46.2
② 소규모 공동주택 적용시, 사유재산(토지,건축)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	6	46.2
- (기타) 무응답	1	7.6
	13	100.0

참여자	댓글 주요내용
○○철	주택 규모별 범죄특성을 파악한 후 CPTED를 적용해야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도 CPTED를 의무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CPTED 적용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에 맞게 CPTED를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500세대미만의 아파트에 CPTED를 적용하려고 하지말고...일단은 규모와 사람의 수가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에 대한 범죄에 대한 특성을 잘 아보고...500세대미만의 아파트에 합리적으로 CPTED를 의무화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	3층 이상 건물 건축허가 조건으로 감시카메라 의무설치 방안 검토해야
	어느 주택가든 아파트 든 상관없이 범죄를 완전하게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이든 최대한이든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감시체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cctv는 사각지대를 모두 감시할 수 있을 정도로 카메라 화질과 카메라 설치대수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시, 군에서도 최대한 건물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가로등의 설치를 늘려야 하며 건물의 채색도 최대한 밝게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층 이상의 건축허가 시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허가 조건에 포함 시키는 방안도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입니다.
○○현	신규주택 CPTED 적용 시 기존 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만약 셉테드가 법제화된다면 새로운 주택단지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조성된 노후주택단지는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방치가 될 것입니다. 셉테드를 법제화함에 있어서 기존 노후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법안도 마련하여야 하며 법제화가 힘들다면,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환경개선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접근통제"란 출입문,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이하 "접근통제시설"이라 한다)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역성 확보"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으로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이하 "영역성 강화시설"이라 한다)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
4. "활동의 활성화"란 일정한 지역에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6. "설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 한한다)
2.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일용품 판매점)
3. 영 별표 1 제4호거목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4.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을 제외한다)
5.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을 제외한다.)
6. 영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영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 영 별표 1 제15호다목의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 기준의 적용을 권장한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를 말한다)]

제2장 범죄예방 공통기준

제4조(접근통제의 기준) ①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영역성 확보의 기준) ① 공적(公的) 공간과 사적(私的) 공간의 위계(位階)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段)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영역성 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의 활성화 기준) ①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이하 "외부시설"이라 한다)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지역 공동체(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외부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조경 기준) ①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조명 기준) ①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게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한다.

제9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의 설치) ① 제5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9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주·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3장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제10조(아파트에 대한 기준) ① 단지의 출입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位階)가 명확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담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1.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투시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울타리용 조경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고 1미터에서 1.5미터 이내인 밀생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 ③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주민 활동을 고려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주동 출입구 주변이나 각 세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경비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경비실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경비실 주변의 조경 등은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고립지역을 상시 관망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경비실·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공용공간에 무인 택배보관함의 설치를 권장한다.
- ⑤ 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3. 차로와 통로 및 동(棟)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출입구 인접지역에 설치를 권장한다.
- ⑥ 조경은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 ⑦ 주동 출입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주동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활용하여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주동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 대체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동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세대 현관문 및 창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세대 창문에는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 현관문은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과 도어 체인을 설치하고, 우유투입구 등 외부 침입에 이용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는 금지한다.

⑨ 승강기·복도 및 계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지하층(주차장과 연결된 경우에 한한다) 및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하고, 계단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⑩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1조(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 관한 사항)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500세대 미만)는 다음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를 권장한다.

1. 창호재는 별표 1의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한다.
2. 출입문은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의 설치한다.
3. 주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계획되되, 부득이 도로나 통행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에 반사경, 거울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한다.
4. 수직 배관은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한다.
5. **건축물의 측면이나 뒤편, 출입문, 정원, 사각지대 및 주차장에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적절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
6.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하지 않는 구조로 계획한다.

제12조(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오피스텔에 대한 기준) ① 출입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한다.

1.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한다.

② 주차장의 계획에 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일용품 소매점에 대한 기준) ①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24시

간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출입문 또는 창문은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이나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③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카운터는 배치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와 직접 연결된 비상연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다중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① 출입구에는 출입자 통제 시스템이나 경비실을 설치하여 허가받지 않은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의 출입구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시스템을 설치한다.
- ③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부터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전용출입구의 설치를 권장한다. 다만, 오피스텔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198호, 2015.4.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는 '18. 7. 기준 19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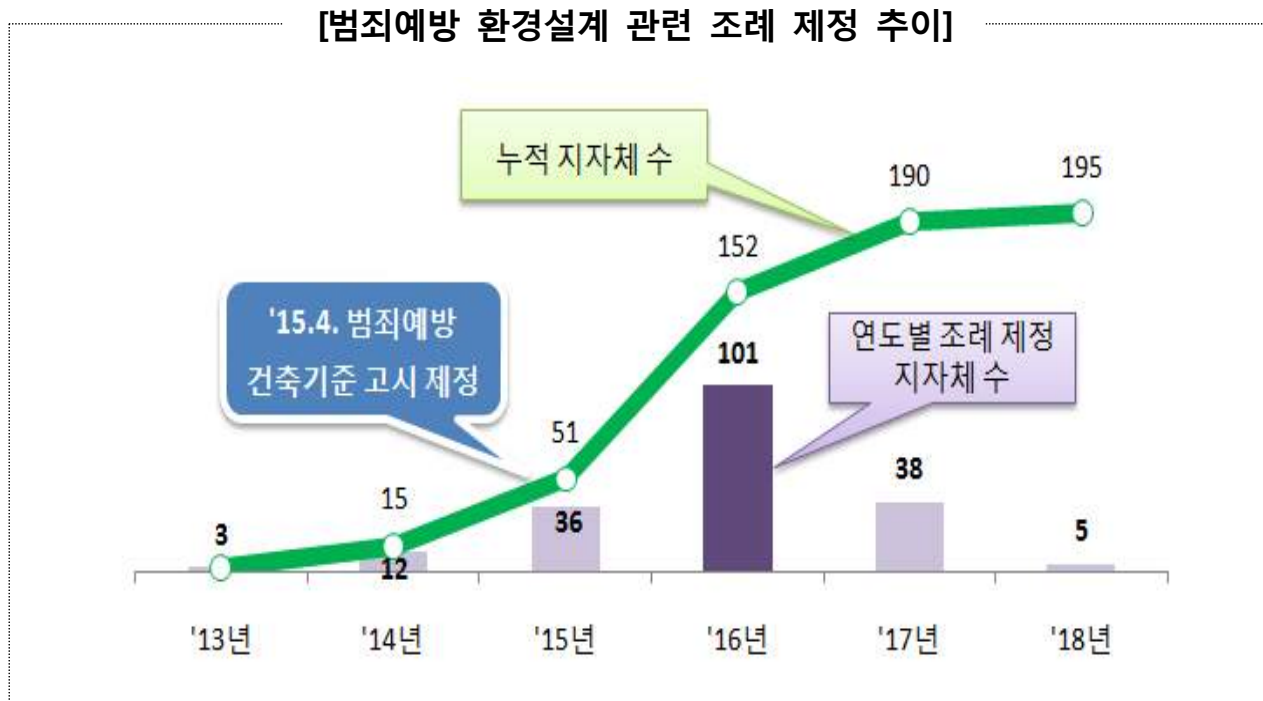
<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

(자료: '18. 7. 13.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 기준	
광역	경기, 부산, 울산	광주, 대전, 경북	대구, 충남, 강원	서울, 세종, 인천, 전남, 제주	전북, 충북		
기초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북구, 부산 사상구, 부산 사하구, 부산 수영구, 부산 영도구, 부산 해운대구, 울산 북구	강원 영월군, 경기 과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의왕시, 경남 거제시, 경북 경산시, 경북 구미시, 경북 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청송군, 경북 포항시, 광주 남구, 광주 동구, 대구 북구, 대전 대덕구, 부산 강서구, 부산 기장군, 부산 동구, 부산 진구, 부산 서구, 부산 연제구, 서울 성북구, 서울 송파구, 서울 은평구, 인천 미추홀구, 전남 목포시, 전남 무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전주시, 충남 천안시, 충남 홍성군, 충북 청주시	강원 강릉시, 강원 고성군, 강원 삼척시, 강원 속초시, 강원 양구군, 강원 양양군, 강원 원주시, 강원 인제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강원 춘천시, 강원 태백시, 강원 홍천군, 강원 화천군, 강원 횡성군, 강원 동해시, 경기 수원시, 경기 시흥시, 경기 안양시, 경기 여주시, 경기 의정부시, 경남 사천시, 경남 양산시, 경북 영덕군, 경북 경주시, 경북 고령군, 경북 군위군, 경북 김천시, 경북 문경시, 경북 봉화군, 경북 성주군,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예천군, 경북 울릉군, 경북 울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칠곡군, 광주 북구, 광주 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동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대전 유성구, 대전 중구, 부산 남구, 부산 중구	서울 강동구, 서울 강북구, 서울 관악구, 서울 구로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동구, 인천 강화군, 인천 계양구, 인천 남동구, 인천 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중구, 인천 옹진군, 전남 고흥군, 전남 광양시, 전남 구례군, 전남 순천시, 전남 영광군, 전남 영암군, 전남 장흥군, 전남 진도군, 전남 해남군, 전남 화순군, 전북 고창군, 전북 장수군, 전북 정읍시, 전북 진안군, 충남 계룡시, 충남 공주시, 충남 금산군, 충남 당진시, 충남 보령시, 충남 부여군, 충남 서산시, 충남 서천군, 충남 아산시,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옥천군,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강원 양양군, 경기 가평군,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성남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연천군, 경기 포천시, 경남 거창군, 경남 고성군, 경남 김해시, 대구 남구, 대구 달서구, 대구 서구, 대구 중구, 대전 서구, 부산 금정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광진구, 서울 금천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서초구,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중구, 서울 중랑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울주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전북 익산시, 충남 예산시, 충북 청양군	경남 통영시,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서울 도봉구, 서울 마포구
	계	3개	12개	36개	101개	38개	5개

* 제 목 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디자인)’가 명시된 조례 기준

- 최근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15. 4.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정 후 조례 제정 지자체가 급증



정 본 입 니 다.

2018. 10. 30.

국 민 권 의 위 원



발급 : 혁신행정담당관실 한재현(044-200-7141)

ASAC